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감사담당관

2017. 6. 15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1. 안 건 명

-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25일(목)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금)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1. 일반회계 세입결산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2016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일반회계	627,980	627,980	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불용율
231,062,000	219,483,260	0	11,578,740	95.0	5.0

3.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 비 비
11,578,740	0	3,060,000	8,518,740	0	0

4.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공공운영비)	4,080,000	2,716,470	1,363,530	33.4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기타보상금)	1,000,000	0	1,000,000	100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포상금)	1,500,000	1,000,000	500,000	33.3
고객만족 행정(공공운영비)	1,080,000	560,180	519,820	48.1

[검토의견]

<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

-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62만 7,9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내용은 청백 e시스템 위탁운영비 전년도 이월금 되겠음
-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2억 3,106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2억 1,948만 3,26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1,157만 8,7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됨
- 집행 잔액(불용액) 1,157만 8,740원에 대한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30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851만 8,740원이 되겠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08만원 중 271만 6,470원이 집행되어 136만 3,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타보상금은 100만원 전액 지출하지 않았고, 포상금은 150만원 중 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음.
- 검토의견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만은 할 수 없으나,
일부는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률이 높은 공공운영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금액이 불용되고 있으며, 장래 재정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결산 심사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피드백되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15년부터 운영된 옴부즈만 제도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와 화합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구민

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소통창구로서 재개발 관련민원, 신축공사 피해 관련 민원, 건축
허가 자와의 피해보상 문제 등 구민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분쟁으로
구청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삼각지대에 놓여있는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적
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전문
가 그룹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들 수당이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고장
마포 및 마포 I-TV 등의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